2025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변경 공고

2025년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

※ 변경내용 요약(공고내용 내 파란색 글씨 부분)

- ↑ 기술심사 시 제품발표 시간을 기존 10분에서 12분으로 확대
- 2 「우수조달물품 지정·관리 규정」 현행화
- ❸ 허위서류 제출 관련 경고문구 추가

2025. 4. 28.

조 달 청 장

1 지정대상

o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」(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)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「우수 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」 제4조에 해당하는 제품

2 신청서류 제출기간

회 별	제 출 기 간			
제1회	2025. 01. 13. ~ 2025. 02. 04.			
제2회	2025. 04. 01. ~ 2025. 04. 18.			
제3회	2025. 07. 01. ~ 2025. 07. 18.			
제4회	2025. 10. 01. ~ 2025. 10. 24.			

- ※「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」제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제품의 지정신청 및 심사 일정은 동일한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.
 - 0 제품설명 및 심사시간 : 25분(발표 12분, 기술설명 3분, 질의응답 10분)
 - ※ 비대면심사*도 동일하게 진행
 - *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비대면 심사로 진행할 수 있으며, 비대면 심사 여부는 우수제품 지정 1차(기술)심사 일정 통보 시 안내

- o **회차별 신청기간 동안에만 신청이 가능**하며, 최종 지정 결정까지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
- o 신청서류 중 '반드시 제출'해야 하는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접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. 다만, '반드시 제출'해야 하는 서류가 아니거나 '반드시 제출'해야 하는 서류를 일부 제출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에서 제외(백지로 제출한 경우 미제출로 간주)
- 0 '25년 1회차부터 신청 제품은 붙임2 '기술이력서'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
- 0 '25년 2회차, 3회차, 4회차 신청 관련 안내사항
 - 「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」 제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동일한 세부품명번호 기준으로 4회 이상 1차 심사에 탈락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신청대상이 될 수 없으나,
 - 1차 심사(기술품질심사)에서 4회 탈락('18년 제3회차 이후)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도 5회까지 신청이 가능
 - 단, 기술소명자료가 「우수조달물품 지정·관리 규정」제4조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, 동 규정 제10조(기술품질심사 생략·대체)는 적용하지 않음
 - ※ 5회 신청 제품은 붙임2 '우수제품 신청대상 확대 시범 운영에 따른 확약서'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
 - * '24년 제4회차 심사에서 5회 신청한 제품은 신청 불가
- 0 '25년 규격추가 심사 관련 안내사항
 - 규격추가 심사 횟수 확대(연 4회 → 6회)
 - '25년 4월, 10월 별도 규격추가 심사* 진행 예정
 - * 구체적인 일정은 심사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

3 │ 신청방법 및 제출방법

- □ 신청방법 : 온라인 접수
 - 0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최종 접수된 신청서*에 한해서 인정
 - * "제출"버튼을 클릭하여 "업체신청완료"된 경우
 - 신청서 양식 : 조달청 홈페이지(www.pps.go.kr>조달업무>물품구매>우수 제품>서식자료)
- 신청관련 문의처 : 종합쇼핑몰 지원센터(☎ 02-590-8830, 8831, 8832, 8834, 8836, 8840, 8848)
 - 신청서 미 접수에 대한 책임은 신청업체에게 있으니, 접수완료 여부를 종합쇼핑몰 지원센터 담당자에게 가급적 확인하시기 바람

□ 제출처 :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접수

o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접속 방법 조달청 홈페이지(www.pps.go.kr>조달업무>물품구매>우수제품>**우수제품지정신청**)



4 │지정절차 및 지정기준

o 「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<조달청고시 제2025-11호(2025.4.1.)>」에 의하며, 접수기간 중 규정 개정 시에는 개정 된 규정에 의함

5 우수제품 1차 기술심사 참고사항

- o 1차 기술심사 시 별도의 PT 자료 없이 제출된 신청서류로만 발표 및 심사 진행
- o 1차 기술심사에 참석하는 인원은 심사 당일 아래 각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(해당업체 소속 임·직원만 참석 가능)
 - 참석자 전원의 신분증 1부, 재직증명서 1부,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(심사 당일 기준 발급분)

※ 우수제품 1차 비대면심사 시 참고사항

- 참석자 전원의 재직증명서 1부,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를 심사 전일까지 이래 담당자에 제출하여야 함(해당업체 소속 임.직원만 참석 가능)
- * 기계장치, 사무기기, 건설환경 분야
 - : 조성관(Tel. 042-724-7461 / Fax. 0505-480-1643)

전기전자, 정보통신, 화학섬유, 지능정보, 과기의료 분야

- : 정준호(Tel. 042-724-7489 / Fax. 0505-480-1354)
- 발표에 필요한 **화상카메라, 마이크, 스피커(이어폰 또는 헤드셋) 준비**
- 1차 비대면 심사시 심사경로는 안내 예정

6 유의사항

o 해당 제품이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, 부당한 공동행위, 독과점적 시장구조,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심각하여 우수제품으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 및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

- o 우수제품신청서에 각종 인증서 등 <u>신청서류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</u> <u>지정제외, 지정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</u>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o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는 매 회차 마다 각기 다른 전문 심사위원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**동일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심사 점수 및 의견이 달라질 수 있으니 양지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붙임: 1. 성장유망제품 및 특허이외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관한 사항 1부.
 - 2. 우수제품 신청대상 확대 시범 운영에 따른 확약서 1부.
 - 3. 우수제품 기술이력서 양식 1부. 끝.

성장유망제품 및 특허이외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관한 사항

성장유망제품

- (대상제품) 4차산업혁명관련 8대 핵심선도산업분야*의 제품 등 조 달물자로 조달청장이 성장유망제품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제품
 - * ①초연결지능화 ②스마트 공장 ③스마트팜, ④핀테크 및 블록체인 ⑤자율주행차 ⑥스마트시티 ⑦에너지신산업 ⑧드론

【성장유망제품 대상】

순 번	분 야	성장 유망 제품	세부품명번호	
1	드론	드론	2513189901	
2	에너지신산업	초소형 승용전기차	2510150903	
3		태양광발전장치	2611160701	
4		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(BIPV)	2611160702	
5		지열히트펌프	4010180603	
6	초연결지능화	3차원 프린터	2326150701	
7		출입통제시스템	4617161901	
8		무인교통감시장치	4617168501	
9	스마트시티	빌딩자동제어장치	3912180101	
10		주차제어장치	2410168901	
11		보행자 자동인식신호기	4616152603	
12		로봇용접기	2315320401	
13	로봇	청소로봇	2315320701	
14		산업용로봇	2315329801	
15		소방로봇	4619167201	
16	기타	성장유망제품으로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서 결정한 신청제품		

- 2 (평가방법) 별도의 "성장유망제품 우수제품지정심사서"로 평가
 - * 기존 기술·품질 평가 비율 6:4에서 7:3으로 조정하고, 일반심사와 달리 기술의 개선 정도를 기술의 효과성(15)과 기술적 완성도(15)로 나누어 평가
 - ※ 성장유망제품 대상 이외의 제품은 일반심사로 진행

특허이외의 기술***이 적용된 제품**

- * 신제품(NEP), 신기술(NET), 연구개발제품, 혁신제품 등
- 수반되는 특허기술을 반영 및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
 - 신청서(신청(모델)규격내역, 제품설명서, 구성대비표 등)에 해당 특허를 명기하고 관련서류* 제출
 - * 신청 시 : 특허증, 원부(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), 등록공보 1차 심사통과 시 :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정보조달우수제품 특허적용여부확인서
- 2 수반되는 특허기술을 미반영 및 참고자료로서만 활용할 경우
 - 해당 특허내용을 삭제(신청(모델)규격내역 미기재, 구성대비표 미제출 등) 및 우수제품 신청시스템의 '기타사항'에 관련서류(특허증, 원부, 등록공보) 제출
 - ※ ●관련 특허를 지정심사에 반영하여 평가받을 경우 우수제품 지정 후 사후 관리(납품제품에 대한 특허적용, 특허 권리변동 등) 대상으로 인정되고,
 ❷미반영된 특허는 비대상으로 인정

우수제품 신청대상 확대 시범 운영에 따른 확약서 (5회 신청 업체)

확 약 서

우수조달물품 확대 시범 운영에 따라 확대 시범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**당사의 4회 탈락한 제품에 대한 정보**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.

업체명	1차 심사 탈락 회차	세부품명	신청 기술소명자료	기술소명자료 유효기간
	예) '23년 2회			

^{*} 우수제품 1차 심사 불합격 당시 관련 내용을 기재(1~4회 탈락 회차 모두 기재)

위 우수제품 지정 신청 내역을 **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 · 제출** 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불이익 조치를 받을 경우 이의제기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.

20 . . .

회사명:

주 소:

대표자: (인)

기술 이력서

업체명	제품명 (규격명)	세부품명	
	(11-7-6)		

제품에 적용된 기술 이력(1)

구분	기술의 종류 (유효기간)	기술 특징	해당 기술로 취득한 우수제품 지정번호
최초 기술	특허 제00-0000000호 (OO.OO.OO~OO.OO.OO)		
개량 기술 (1)	특허 제00-0000000호 (OO.OO.OO~OO.OO.OO)		
:	÷		

	기술의 종류 (유효기간)	기술 특징	이전 기술과의 차별성
신청 기술	특허 제00-0000000호 (OO.OO.OO~OO.OO.OO)		

제품에 적용된 기술 이력(2)

구분	기술의 종류 (유효기간)	기술 특징	해당 기술로 취득한 우수제품 지정번호
최초 기술	특허 제00-xxxxxxx호 (00.00.00~00.00.00)		
개량 기술 (1)	특허 제00-xxxxxxx호 (OO.OO.OO~OO.OO.OO)		
÷	÷		
	기술의 종류 (유효기간)	기술 특징	이전 기술과의 차별성
신청 기술	특허 제00-xxxxxxx호 (00.00.00~00.00.00)		

주)

- 1. 세부품명 기준으로 작성(두 개 이상 세부품명 신청 시 각각 작성)
- 2. 신청 제품에 적용된 모든 기술을 각각 기재(국내기술에 한하여 작성)
- 3. 지정 신청 기술이 신제품(NEP), 신기술(NET), 혁신제품의 경우 반영된 특허 기재[예시: NEP(특허 10-000000호)]
- 4. 개량 기술이 하나 이상일 경우 모두 기재
- 5. "최초기술"이란 신청 기술과 연관되어 최초 등록한 기술을 말한다.
- 6. "개량기술"이란 최초 등록 이후 개선·향상된 기술을 말한다.
- 7. "신청기술"이란 최초 등록 이후 개량 과정을 거쳐 신청 제품에 적용된 기술을 말한다.